

청주지방법원 2021. 4. 1 선고 2019가단2631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C

피 고 1. D

2.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김승현, 이재은

변론 종결 2021. 2. 4.

판결 선고 2021. 4. 1.

주 문

1. 피고 D는 원고에게 13,221,478원 및 그 중 1,156,920원에 대하여는 2019.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7%, 5,5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5%, 5,833,345원에 대하여는 2019.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6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 다.
3. 피고 E은 피고 D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9. 1. 23. 접수제91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5. 4. 피고 D와 사이에 신용카드거래약정(물품 및 용역의 일시불구입, 할부구입, 현금서비스 이용 등)을 체결하였고, 2017. 4. 6. 피고와 사이에 '이지론'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만기일 2020. 10. 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 D가 위 각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사용한 카드사용대금 및 현금서비스 잔액과 수수료, 연체료, 대출금 잔액과 이자 및 각 연체이율은 2019. 5. 14. 기준 아래와 같다.

구분 카드번호, 계좌번호		연체원금	수수료	연체료	약정이자 (편입전이자)	약정이자 (발생이자)	합 계	연체 이율
F 카드	일시불	213,760	0	7,071	0	0	220,831	22.7%
	할부	377,264	34,286	10,709	0	0	422,259	
	할부 미청구	565,896	0	0	0	0	565,896	
소 계		1,156,920	34,286	17,780	0	0	1,208,986	
F 카드	현금서비스	5,500,000	159,931	240,722	0	0	5,900,653	23.5%
소 계		5,500,000	159,931	240,722	0	0	5,900,653	
F	연회비/SMS	0	8,000	0	0	0	8,000	-

카드							
소 계	0	8,000	0	0	0	8,000	
카드이지론 G	5,833,345	0	0	99,891	170,603	6,103,839	16.68 %
소계	5,833,345	0	0	99,891	170,603	6,103,839	
전 체 합 계	12,490,265	202,217	258,502	99,891	170,603	13,221,478	

다. 피고 D는 2019. 1. 23. 아들인 피고 E과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 E 앞으로 이 법원 2019. 1. 23. 접수 제9140호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원고에게 합계 13,221,478원 및 그 중 카드사용대금 잔액 1,156,920원에 대하여는 계산기준일 다음 날인 2019.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22.7%, 현금서비스 잔액 5,500,000원에 대하여는 계산기준일 다음 날인 2019.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23.5%, 대출금 잔액인 5,833,345원에 대하여는 계산기준일 다음 날인 2019.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16.68%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은 그 성립의 기초가 이미 발생되었고, '이지론' 대출금 채권은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피고 D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재산상태

가) 적극재산

(1) 이 사건 아파트 : 185,000,000원

(2) 경상북도 예천군 H 임야 50380㎡ 중 50380분의 6611지분 : 3,204,797원

나) 소극재산

(1) 이 사건 아파트의 피담보채무인 I은행에 대한 가계일반분할상환대출 28,887,892원 및 95,530,963원 합계 124,418,855원

(2) J은행(분평동지점)에 대한 채무 6,145,000원

(3)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대금채무 700,000원

(4) 원고에 대한 현금서비스 원금 5,500,000원

(5) 원고에 대한 이지론대출원금 5,833,345원

(6) K은행 L 2,908,000원

(7) M카드 6,600,000원

(8) N카드 3,500,000원

(9) K은행(본부총괄) 9,200,000원

(10) O카드 (본점재경팀) 1,628,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I은행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된 부분 60,581,145원(=시가 185,000,000원 -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 합계 124,418,855원) 및 경상북도 예천군 H 임야 중 피고 D의 지분 3,204,797원을 더하면 적극재산은 63,785,942원이 되고, ②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는 42,014,345원이어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는데, ③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적극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된 부분 60,581,145원이 감소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는 바, 피고 D가 피고 E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여 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채무자인 피고 D가 자신의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감소를 가져오게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E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 E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E은,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을 당시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항변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 E은 그원상회복으로서 피고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법원 2019. 1. 23. 접수 제91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수